

#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제정일 2018.1.29

개정일 2023.8.21

##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온라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케이씨지아자산운용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한다)의 개별약관으로서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용어의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라 함은 웹트레이딩시스템 등에 의하여 이용자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주문, 이체거래, 계좌대체, 입출고신청, 잔고조회, 투자정보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2. "ID"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숫자, 영문자 또는 숫자와 영문자의 혼합을 말하며, 이용자가 계좌개설 시 설정하여야 한다.
3. "비밀번호"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계좌개설 시 설정한 숫자와 영문자의 혼합을 말한다.
4. "종합계좌"라 함은 입출금과 수익증권매매가 가능한 회사의 고객명의 수익증권계좌를 말한다.
5. "이체거래(이체입금, 이체출금)"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금융기관계좌에서 종합계좌로의 입금 및 종합계좌에서 타금융기관계좌로 출금하는 거래를 말한다.
6. "은행이체약정"이라 함은 고객이 신고한 거래인감(또는 서명감)을 날인(또는 서명)한 출금전표 및 보안매체 검증 없이 회사의 종합계좌로부터 특정 지정출금계좌로 자금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한다.
7. "계좌대체"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회사의 종합거래계좌간 자금 등을 이체(대체처리)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9. "전자서명비밀번호"라 함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시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10. "일회용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 등록 및 온라인 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특정한 종류의 업무 시 보안을 위해 적용하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말한다.

## 제3조(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통신매체에 따른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WTS(Web Trading System) : 컴퓨터를 통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주문, 이체거래, 계좌대체, 잔고조회, 투자정보조회 등

- ② MTS(Mobile Trading System) : 휴대폰, PDA, 무선 단말기 등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주문, 이체거래, 잔고조회, 투자정보조회 등
- ③ ARS(Audio Response System) : 회사의 대표번호로 기기조작방법 문의, 펀드문의, 계좌관련문의 등의 업무를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ARS : 02-6320-3000)
- ④ CMS(Cash Management Service) : 자동이체매수서비스

#### 제4조(서비스의 신청 및 해지)

- ①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해지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용자가 제3조 제1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계좌를 개설하고, 본점(영업점)에 내방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제3조 제1호의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영업점)을 방문하여 종합계좌폐쇄(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전산설비가 여유가 없거나, 통신장애 등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 신청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보사실 및 기간을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공지한다.

#### 제5조(서비스 제공형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보서비스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 전용회선망, 무선호출망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할 수 있으며 업무의 제공시기, 처리방법 등은 회사의 전산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 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한다.

#### 제6조(자동이체매수서비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자동매매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자동이체매수서비스(CMS)"란 회사가 고객과의 사전 약정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명의 또는 고객의 가족명의의 계좌(은행출금계좌)에서 고객이 정한 특정일자(출금일)에 고객이 정한 일정금액(이체금액)을 출금하여 회사에 개설된 고객명의의 종합계좌(입금계좌)로 입금하는 자동이체서비스와 동시에 고객이 지정한 펀드를 자동매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서 자동매수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펀드상품을 사전에 약정한 매수금액만큼 매수주문일자에 고객의 종합계좌에 보유한 현금으로 자동매수 주문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7조(자동이체매수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 본점(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비스신청서 제출
  2. 회사 홈페이지 내 웹트레이딩시스템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활용
- ② 고객이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서비스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 ③ 고객이 자동이체매수서비스의 이체금액, 출금일 또는 자동매수서비스의 매수금액, 매수주문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 ④ 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이체종료일이 지나면 자동해지 된다. 단, 고객이 중도해지를 원

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자동해지 된 이후라도 고객이 이체종료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재개시 할 수 있다.

#### 제8조(자동이체서비스의 처리)

- ① 은행자동출금이체 가능일은 회사가 정하며, 고객은 회사가 정한 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 출금일로 정한다. 회사가 정한 날짜는 매월 5일, 20일, 25일로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은행출금계좌에서 출금일에 별도의 거래인감(또는 서명)이 날인된 신청서 없이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입금일에 입금계좌로 입금처리 한다. 단, 출금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처리한다.
- ③ 출금일 은행영업시간까지 고객의 은행출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출금처리되며, 출금일 당일 수표로 입금된 경우에는 출금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자동출금이체 처리가 불가능하다.
  1. 은행출금계좌의 인출가능금액이 이체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2. 지급제한 등 은행이 사전에 안내한 사유로 은행출금계좌에서의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
- ⑤ 은행자동출금이체 처리 시 금융결제원 전산망 장애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복구 후 재처리된다.
- ⑥ 출금일에 고객의 은행출금계좌에 다수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출금처리된다.
- ⑦ 입금처리 후 고객이 지정한 펀드를 지체 없이 일괄 자동매수 처리한다.

#### 제9조(자동매수서비스의 처리)

- ① 매수주문일자 가능일은 회사가 정하며, 고객은 회사가 정한 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 매수주문일자를 정한다.
- ② 고객의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가 매수대상 펀드계좌의 모계좌가 아닌 경우, 회사는 매수주문일자에 약정한 종합계좌에서 별도의 거래인감(또는 서명)이 날인된 신청서 없이 매수금액을 출금하여 매수대상 펀드계좌의 모계좌인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로 입금처리 함과 동시에 매수주문 처리한다. 단, 매수주문일자가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하여 매수주문 처리한다.
- ③ 수익증권계좌(종합계좌)의 매수가능금액이 약정한 매수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자동매수는 처리되지 않는다.

#### 제10조(자동이체매수서비스 중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 ① 서비스 약정한 입금계좌 또는 펀드계좌가 해지 또는 폐쇄된 경우
- ② 자동이체매수 또는 자동매수 되는 펀드상품의 적립식 만기일이 지난 경우

#### 제11조(공인인증서의 이용)

- ①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증서등록 : 타기관에서 발급한 범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인증서해지 : 고객이 공인인증서 해지의사 결정 후 해지절차를 거침으로써 인증서 사용이 중지된다.
  - 3. 인증서내용보기 : 저장한 인증서의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고객정보 변경, 매매주문, 입출금 등 서비스 제공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

#### **제12조(접근매체)**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 제2조6항'에서 정하는 접근매체를 활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이용자 확인방법)**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등 이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에는 이용자를 계좌의 명의인으로 본다.

#### **제14조(매매주문)**

- 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접주문 가능시간은 해당 집합투자증권 규약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단, 매매주문체결시스템의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한다.
- ②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주문 처리시 증거금 부족, 잔고부족 등의 수탁거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주문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 ③ 전산 및 회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주문 처리결과 보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문입력 후 처리완료까지의 결과확인온 이용자가 직접 해야 하며, 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이중주문 등 이용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④ 불공정거래의 소지나 고객의 조작착오에 의한 주문 등을 막기 위하여 회사는 매매수량 및 금액, 증거금사용, 주문방법, 주문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5조(이체거래)**

- ① 이체입금이라 함은 가상계좌를 부여 받은 이용자가 타금융기관계좌로부터 약정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입금을 말한다.
- ② 이체출금이라 함은 이용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종합계좌로부터 타금융기관계좌로 자금을 출금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은행이체약정을 할 경우, 이용자가 종합계좌 개설 시 동일인 명의 타금융거래계좌를 사전에 지정하여 보안카드 및 OTP등의 보안매체 없이 지정출금계좌로 자금을 출금할 수 있다. 이후 지정출금계좌를 변경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하다.
- ④ 이용자는 이체거래를 실행한 경우 당해 이체거래의 정상처리 여부를 회사 또는 타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⑤ 이체거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간 및 수수료 등은 <별첨>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거래가능시간 내에서의 이체거래 시 출금계좌의 인출가능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이체가 실행되지 아니한 경우 이체거래 신청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금융결제원 전산망 장애 등의 사정으로 이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애복구 후 입출금 처리된다.

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다.

1. 종합계좌가 통합 또는 폐쇄된 경우
2. 출금계좌에 대하여 사고신고의 접수 또는 법적 지급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전산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출금이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16조(계좌대체)**

- ① 계좌대체 처리는 출금정지, 질권 설정된 계좌 등 출금이 제한된 계좌를 제외한 모든 종합계좌에서 가능하다.
- ② 이용자가 계좌대체를 신청하였을 경우 회사는 즉시 출금을 지정한 계좌에서 대체출금하여 입금을 지정한 계좌로 대체입금 처리한다.
- ③ 회사는 계좌대체 신청 시 이용자의 거래인감이 날인된 전표의 작성 없이 대체거래를 처리한다.
- ④ 이용자는 대체거래가 완료되면 즉시 출금을 지정한 개별계좌의 잔고변동사항과 입금을 지정한 개별계좌의 잔고변동사항을 비교하여 반드시 대체거래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17조(거래내용 및 잔고증명서 서면요청)**

거래내역 및 잔고증명서의 서면 제공요청은 웹트레이딩시스템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회사는 거래내역 및 잔고증명서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교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고객에게 징수하지 않는다.

#### **제18조(서비스 이용료 등)**

- ① 회사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 ② 전화료 및 타 유료서비스를 통한 접속 시 부과되는 요금은 고객이 해당 서비스업체에 지불한다.

#### **제19조(이용권리의 양도 등)**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한을 제3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양도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데이터, 소프트웨어, 출판물의 저작권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

#### **제20조(서비스 제공중지)**

-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3일의 시정조치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 1. 공중전기통신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 2. 거래계좌번호, 거래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비밀번호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해킹(hacking) 등 고의로 회사의 전산망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 4.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관련 법령이나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
- ② 종합계좌의 폐쇄 시 해당 계좌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는 자동중지 된다.

### 제21조 (책임범위)

- ⑦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 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4.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⑨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⑩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 제22조(전산장애 시 서비스 이용방법)

전자금융 거래 장애 시 회사의 ARS(02-6320-3000)에 전화하는 방법으로 대체 주문할 수 있다.

### 제23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해지)

- ①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와 같다.

1. 본점(영업점)을 통한 서면 제출
  2. 웹트레이딩시스템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 ② 사고해지는 본점(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해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4조(이용자 준수사항)

- ① 이용자는 ID,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의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누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연락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회사의 비밀번호 관리원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동일숫자, 연속숫자 등의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타인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을 자제하여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가 설정한 계좌비밀번호, 비밀번호, 전자서명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로 접속 시 회사가 정한 횟수 이상 연속하여 오류 입력 시 접속이 중지된다. 또한 일회용비밀번호는 전체 금융기관 통합적으로 횟수 관리가 되며, 오류초과 시 전체 금융기관의 사용이 중지된다.

#### 제25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본점(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전자통신매체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본점(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거래제한)

-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 제27조(관계법규 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 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제28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9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0조(기타)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2018.1.29)

(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21)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1. 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조회 : 00:00~24:00
  - 펀드가입 : 08:00~23:00
  - 약정등록 및 정보변경 : 평일 09:00~17:00
  - 펀드매매 : 평일 09:00~17:00
  - 은행이체 : 07:00~23:00
  - 계좌개설 : 08:00~23:00
  - 예약매수 : 평일 17:00~23:00, 토/일 공휴일 : 8:00~23:00
- 수수료 : 없음